

인천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259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성창재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성곤

변론 종결2021. 2. 4.

판결 선고2021. 3. 25.

주 문

1. 가.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16.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8. 6. 16.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7. 2. B과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4. 7. 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C은행은 'B이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7.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9. 25. C은행에 45,780,3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은 2018. 6.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6. 16. 부담부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8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4억 5,000만 원 정도였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226,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다만 대출명의자는 그대로 B로 두었다).

2) 피고와 B은 1996.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8. 6. 12.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8. 9. 13.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2018. 10. 1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단체에 대한 2020. 1. 2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자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B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8. 6. 16.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8. 10.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로 원고가 2019. 9. 25.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B이 1996.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8. 6. 12.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8. 9. 13.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2018. 10. 1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B이 그 무렵인 2018. 6. 16. 피고에게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와 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2, 3, 4, 8, 제4호증의 4, 5,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4,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협의이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B과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적극재산은 555,079,781원, 소극재산은 192,883,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적극재산으로 105,079,781원 상당의 채권이, 소극재산으로는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게 되었고, 피고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사실상 약 3억 5,7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점, ③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게 된 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은 점, ④ 이혼 당시 피고는 B로부터 미성년 자녀(F생)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약 39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한 점, ⑤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B이 G 육가공 도매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인데, 피고는 이혼 전인 2015. 11. 6.경부터 B과 함께 위 사업장이 위치한 부천시 H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혼 후 2019. 7. 11.까지 위 식당을 운영한 점, ⑥ B의 외도로 피고와 B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피고가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분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극재산 내역표]

1	이 사건 부동산	45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행위와 동시에 B의 재산에서 벗어나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C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	33,879,469원	을 제2호증의 4, 5,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B이 2011. 8. 31. 1과 부천시 소사구 H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11. 1. 위 부동산을 식당 부분과 육가공 칸 부분으로 나누어 육가공 칸에 대하여는 B이, 식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각 임차인이 되어 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분리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제 임차인이 B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은 위 육가공 칸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가진다.
3	C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	1,200,312원	
4	부천시 소사구 H 중 G육가공 칸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1	이 사건 부동산	45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행위와 동시에 B의 재산에서 벗어나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반환채권		
5	부천시 J빌딩 5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	
7	부천시 원미구 K 1층 동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	
합계	555,079,781원		

[적극재산 중 인정하지 않는 내역]

① 부천시 소사구 H에 대한 권리금 3,500만 원, 부천시 원미구 K, 1층 동쪽에 대한 권리금 5,000만 원, 부천시 원미구 L빌딩 M호에 대한 권리금 240만 원: 권리금은 장차 현실화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 부천시 원미구 N건물 M호에 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갑 제2호증의 6,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 O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5.부터 2017.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2. 23.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P으로 바뀌자 그 무렵 P과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연장한 사실, 이후 Q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8. 3. 20. P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30.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2015. 3. 5. ~ 2018. 6. 30.까지 계약의 기간연장계약이다"라고 특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위 부동산에서 네일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인 Q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③ 부천시 R빌딩 S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을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6. 9. 8. T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임대차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가 2019. 3.경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T과 연락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적극재산에 포함하기 어렵다.

④ 시흥시 U건물 V호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을 제2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8. 6. 13. W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9.부터 2020.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 영수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잔금의 지급기일이 2018. 6. 19.로 이 사건 증여 이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B이 W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천시 원미구 L빌딩 M호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위 채권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과 X의 동업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B이, 인테리어비용과 사업자등록은 X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곧바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⑥ Y, Z, A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증거로 Y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이행각서(을 제2호증의 11)와 B이 Z, AA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2호증의 12, 13)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B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위 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회수내역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A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이 A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22030호로 물품대금 6,772,6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 18.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⑧ A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4023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B에 대한 10,388,08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이 56%,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상 변제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자연채무로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됨에도 피고는 B이 위 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상의 변제예정금액과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당초의 채권액인 10,388,085원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⑨ 주식회사 A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을 제11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주식회사 AD에 대해 1,6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⑩ 중국 천진시 소재 백화점의 AE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시설자금 등의 채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극재산 내역표]

1	D 모기지론 부동산담보 대출 잔액	92,883,000원	원고는 위 채무를 89,851,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E단체의 2020.1.28.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가까운 2018. 6. 15.를 기준으로 한 채무액은 92,883,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채무액으로 산정한다.
2	C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원	원고는, 위 각 채무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전체 대출액인 1억 3,000만 원을 채무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이너스 통장은 채무액수가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데 B이 2018. 6. 16. C은행에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 C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B이 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 중 3,000만 원의 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 1억 원의 채무만 인정하기로 한다.
3	C은행(신용보증기금 보증)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원	
합계	192,883,000원		

[소극재산 중 인정하지 않는 내역]

① AF 주식회사에 대한 68,935,000원의 대출금 채무: E단체에 대한 2020. 1. 2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F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8. 3. 1.부터 2020. 4. 23.까지 위 회사에 대한 대출 및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기와 그 내용, 피고의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화정

별지